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72 발의연월일: 2021. 7. 19.

발 의 자: 김도읍・추경호・조수진

김태흠・이명수・구자근

태영호ㆍ이 용ㆍ유한홍

이헌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 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 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
 - 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
 - 3. 임시가설공사
 - 4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8호의 저압에 해당하고, 전기 시설용량이 10kW이하인 공사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1조(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제11조(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) ①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)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 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삭제>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(2) -----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시 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 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 ----. <u><단서</u> 삭제> 주하여야 한다. 다만.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 <신 설>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예외로 할 수 있다.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 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

런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 는 공사

3. 임시가설공사

4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
제2조제8호의 저압에 해당하고, 전기시설용량이 10kW이하인 공사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